

제 9 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채택 건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

건 의 문

5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제9회 전국도서관대회가 서울·부산·진주·대전 등지에서 653명의 도서관인이 참가하여 개최되었습니다.

이 대회에 참석한 도서관인들은 국가의 지상목표인 근대화에 있어서 우리 도서관이 담당하여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고, 5천여명의 전국 도서관인이 문현적 정보자료를 신속하게 수집, 제공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일익을 담당,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과학기술의 향상과 민족문화 전통에 크게 기여코자 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이나, 도서관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만 보다 효율적인 도서관봉사가 이루어지고, 보다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 지겠기에 다음 사항을 건의하오니 정부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0년 6월 13일

전국도서관인 일동

건 의 사 항

1. 도서관법의 개정요망

도서관법이 제정 공포된 것이 1963년 10월 28일로서 이미 7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7년전에 우리나라의 도서관사업의 개척과 기초작업을 위해서 모범으로서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동법이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는 가운데 도서관과 사회의 발전에 따라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또 새로운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법으로써 보완과 개정이 결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은 우리나라 도서관 사업의 모범인 만큼 문화와 사회 교육, 나아가서는 산업발전에 뒷받침이 될 적절하고 현실에 맞는 개정조처가 어느 분야보다도 먼저 정비되고 현실성 있는 법률로서 보완이 서둘러져야 하겠습니다. (동법 개정의 구체적인 안은 점토 작성중에 있습니다.)

회신 : 앞으로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2. 사서직에 대한 처우 개선 요망

사서직은 도서관자료의 관리와 운영(봉사)에 있어 서계속적으로 문헌정보를 수집, 연구, 분석, 정리하여 독자에게 제공하는 일을 주업무로 하는 직종이니 만큼 분야에 따라 광범위한 지식을 갖추어 가져야만 도서관봉사의 충실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법에 의거하여 전문적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인정하는 자격증을 국가로부터 받은 사람만이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바 전문직과 연구직으로서는 물론 서고의 비워생적인 환경에서 무리하게 정신적, 육체적 노동을 해야하는 직종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유사한 타직종과 같이 당연히 직무수당, 연구수당 또는 보전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오며, 이미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서 지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서직 수당이 지급되도록 국공립의 공공, 대학, 학교, 특수도서관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관계 당국에 바라오며, 사립의 공공대학, 학교, 특수도서관 사서직에게도 국립, 공립에 준한 수당이 지급되도록 조처하여 주실 것을 관계기관장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회신 : 국가 시책상 수당의 신설과 확대, 공부원의 증원을 억제하고 있어 실현이 어려운 실정임

3. 도서관 설치기준 제정 요망

현행 대학설치기준령의 도서관 관계조항에는 장서수만 규정되어 있고, 도서관건물의 각 기능별 시설의 평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서수 만의 규정으로는 합리적인 도서관 시설과 운영을 기할 수가 없으며, 도서자료 또한 기준 도달만을 목표로 하여 교육과정과 무관한 잡서를 수집하는 폐단이 있어서 국가경제를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 온 바 대학과 학교도서관의 시설기준령을 조속히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 대학 설치 기준령 제11조 제1호에 도서관에는 열람실, 정기간행물실, 서고, 사무실을 갖추어야하고 동조 제2호에 열람실에는 학생정원의 15%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학교(대학의 경우에 한함)의 규모가 상이하여 이의 각 기능별 시설 평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있으나 도서관

시설 실태 조사시 기능별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평수를 규정하도록 연구할 것임.

4. 전국 대학의 교양학부 과정에 도서관학 강좌설치 요망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선진국의 예와 같이 전국 각대학에 도서관학강좌를 설치하여 교육하므로 대학생들이 도서관의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용하는 지식을 더득시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즉 대학교육이 연구, 조사활동을 기간으로 삼는 것인만큼 대학생들이 인류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한 각종 도서관자료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도서 및 도서관 이용방법이 미숙하여 그것을 이용한 학습자의 습관을 기르지 못하고 교수의 강의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신 : 대학의 교육과정은 당해 대학 자체에서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하여 교양교육과정도 동일한 과정으로 설치되므로 대학자체에서 결정할 사항임

5. 사서직 TO의 증배 요망

도서관은 교육장으로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중심으로 사회교육과 학교교육 및 대학교육에 있어서의 도서관인의 역할은 전문적인 교육과 연구를 뒷받침하는 일을 담당하는 직종으로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문현정보의 제공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도서관은 이와 같은 일을 담당할 사서직의 수적 부족때문에 기본적인 기능마저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대학도서관이나 시민의 학교인 공공도서관, 제2세 교육을 담당한 학교도서관, 군기관, 은행, 국영기업체 및 각종 연구기관 도서관도 같은 입장에 있으니 관계 당국과 기관장에게 사서직 TO를 늘려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회신 : 2 항과 동일

6. 보존도서관의 설치요망

우리는 어느 민족보다도 자랑스러운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혁명한 문화유산의 보존체제에 의해서 이루어 졌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문화유산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기록물을 보존 전승시키는 일은 반드시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날 수많은 천재지변과 변란의 혼란중에서도 도처에 사고(史庫)를 설치하여 우리의 정신적

유산(서체)들을 보존하여 우리에게 계승하므로써 수천년전의 문화유산을 지금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날에 와서도 이 일은 우리에게 절실히 과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문화유산의 다양화와 폭주, 그리고 소멸되어 가는 귀중한 자료들의 계속적인 보존과 후손에게 전승시키는 사업은 시급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모쪼록 관계 당국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국내 각지역을 감안하여 전국 20여개지역에 보존도서관을 지정하여 각종 진행물이 빠짐없이 수집 보존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 보존도서관 지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연구 검토하여 조치할 계획임

7. 학교도성관 장학체계 확립 요망

도서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설치되었거나 앞으로 설치될 학교도서관을 지도록 하며, 도서관자료를 합리적으로 활용케 하므로써 학교교육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도서관을 통한 자율학습과 이용지도를 체계화하여 학교교육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장학지도가 결실히 요청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하여 문교부 및 각 시·도 교육위원회에 학교도서관을 담당할 장학관과 장학사를 임명하여 체계를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 공무원의 정원상 도서관 행정을 전담하는 장학관 또는 장학사를 임명할 수는 없으며 현재 본부 및 각 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중 학교도서관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장학사가 지명되어 있음

8. 도서구입비 증액요망

각급 도서관의 운영비와 도서구입비의 부족으로 새로운 도서의 구입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대학과 학교에서 받고 있는 자율경비 가운데 도서비의 비율을 대폭 증폭시켜 주시기를 바라오며, 운영비가 염출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에도 그 예산중 도서구입비를 대폭 증액시켜 신간도서와 외국의 자료가 빠짐없이 수집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조처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회신 : 대학시설 연도별 보충기준령(문교부령 제256호)에 의거 도서관의 설비 및 도서를 연차적으로 완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서구입비는 연차적으로 증액하도록 추진중임.

9. 외국학술잡지의 신속한 구입방안 촉구

외국학술잡지의 구입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나라는 현재 그 구입기간이 매우 지연되는 실정이므로 연구기관 및 학계에서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바 아래의 문제가 시정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 유네스코에서는 쿠폰 배정을 월 2회 이상 배정하여 주실 것.
- 쿠폰의 간접배정에 있어서 쿠폰 매입후 4개월이 지나도 신청도서가 입수되지 않을 경우, 유네스코

에서는 이와 같은 불실대행 기관을 대행업의 취소 등 단호한 감독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 외국 학술잡지의 구입을 위하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매월 1회 이상 쿠폰배정을 하고 있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는 도서구입 대행업자의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대행기간은 1년간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실적이 없거나 불실한 대행업자는 자연 도태되고 있음.

이 달의 도서관 역사

11월

평주읍도서관 개관(1920)

경성도서관 현시설의 3배로 확장할 것을 계획(1922)
개성도서관 개관식 거행(1924)
이월(利原)도서관 개관(1931)
청량부립도서관 개관(1935)
진남포부립도서관 신축 낙성(1936)
원산부영 제일도서관 낙성식 거행(1939)
박봉석「조선공공도서관분류법지사」을 문현보국에 발표(1940)

경기도지구도서관협의회 결성(1964)

1일 단국대 학도서관 설립(1947)

제주도립도서관 설립(1957)

인천시립도서관에서 판지 창간(1961)

3일 인천시학교도서관협의회 결성(1960)

4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인도, 태평양지구에 있어서의 국제출판물교환 및 아세아도서관협회 창립총회에 이봉순, 김월규 양씨 참석(1957)

5일 해군본부도서관 설립(1955)

문교부와 한국도서관협회 공동주최로 15일까지 제7회 도서관실무자 강습회를 보통반, 전문반으로 구분하여 연세대학교에서 개최(1962)

이조전기국역불서전관목록을 동국대학교불교문화연구소에서 출판(1964)

6일 Peabody 교육사결단 주최로 광주에서 8일까지 전남 중, 고 및 사범학교도서관 담당 교사에 대한 지방순회 강습회 개최(1959)

7일 대전시립도서관 설립(1961)

10일 김포군립도서관 설립(1961)

11일 제1회 독서주간을 27일까지 실시(1955)

13일 공군중앙도서관 설립(1957)

14일 임종순 저 「분류표비교연구」 출판(연세대학교 도서관학총서 제13집)(1963)

15일 한국전력 주식회사도서실 설립(1962)

천해봉 저 고서목록에 있어서의 당면한 제문제 출판

연세대학교 도서관학총서 제11집)(1962)

명제희 저 「도서관의 관리상 조직」 출판(연세대학교 도서관학총서 제12집)(1962)

17일 문교부와 한국도서관협회 공동주최로 제4회 도서관설

무강습회를 국립도서관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1958)

문교부와 한국도서관협회 공동주최로 제6회 도서관설

무자강습회를 국립도서관에서 개최(1961)

이병수 저 도서분류도론, 분류규정을 중심으로 출판(1963)

18일 부산지구도서관협의회 주최로 25일까지 부산시내 각

급 도서직원에 대한 도서관실마-강습회를 개최(1963)

20일 부산시학교도서관협의회 결성(1958)

「제1회 마을문고설립파 육성의 달」로 정하고 한달동

안 행사(1964)

22일 함양군립도서관 설립(1963)

23일 연세대학교중앙도서관 신축기념으로 「한국의 판본과

활자본 전시회」를 25일까지 동교 도서관에서 개최(1957)

26일 경성시립도서관(현 남산도서관) 해방후 개관(1945)

국회 도서관법 공포(법률 제1454호)(1963)

27일 제2회 도서관설립파 육성의 달」로 정하고 한달동

안 행사(1964)

경남도교육위원회는 마산동중학교에서 「도서관 라인 학교」의 일년간 활동상황 보고회를 개최(1964)

28일 문교부 주최로 29일까지 전국학교도서관연구회가 인

천제2고등학교도서관에서 개최(1963)

문교부와 한국도서관협회 공동주최로 12월7일까지 제

9회 도서관실무자 강습회 개최(1963)

(4면에서 계속)

대통령과 학자 자문위원회가 1963년 「과학과 정부와 정보」란 표제로써 미국 정보와 민간에게 권고한 보고서, 이것은 연구개발과 정보와의 관계를 명확히 한 것으로 미국 과학기술계, 정보관계자 도서관인 등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이 보고서에 따라 미국의 강력한 과학기술 정보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7) Murdock, J. W. J. Chem. Doo. 2:126-127 1962

8) Murdock, J. W., Brophy, C. A. Jr. Libr. Trends 14

347-352 1966. 11 172-173 1970에 이것은 김두홍씨 번역으로 도협월보 11 172-173 1970에 기재되어 있음

9) 원문에서 가장 새로운 부분만을 원문의 저자가 쓴 문장으로써 인출한 것. 그러므로 초록과는 다르다.

10) Darby, R.L. Spec. Libr. 59 91-97 1968

11) 山本直久 情報管理 11 240-244 1968

12) A Directory of Information Resources in the United States.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 C 1967